

2026년 경북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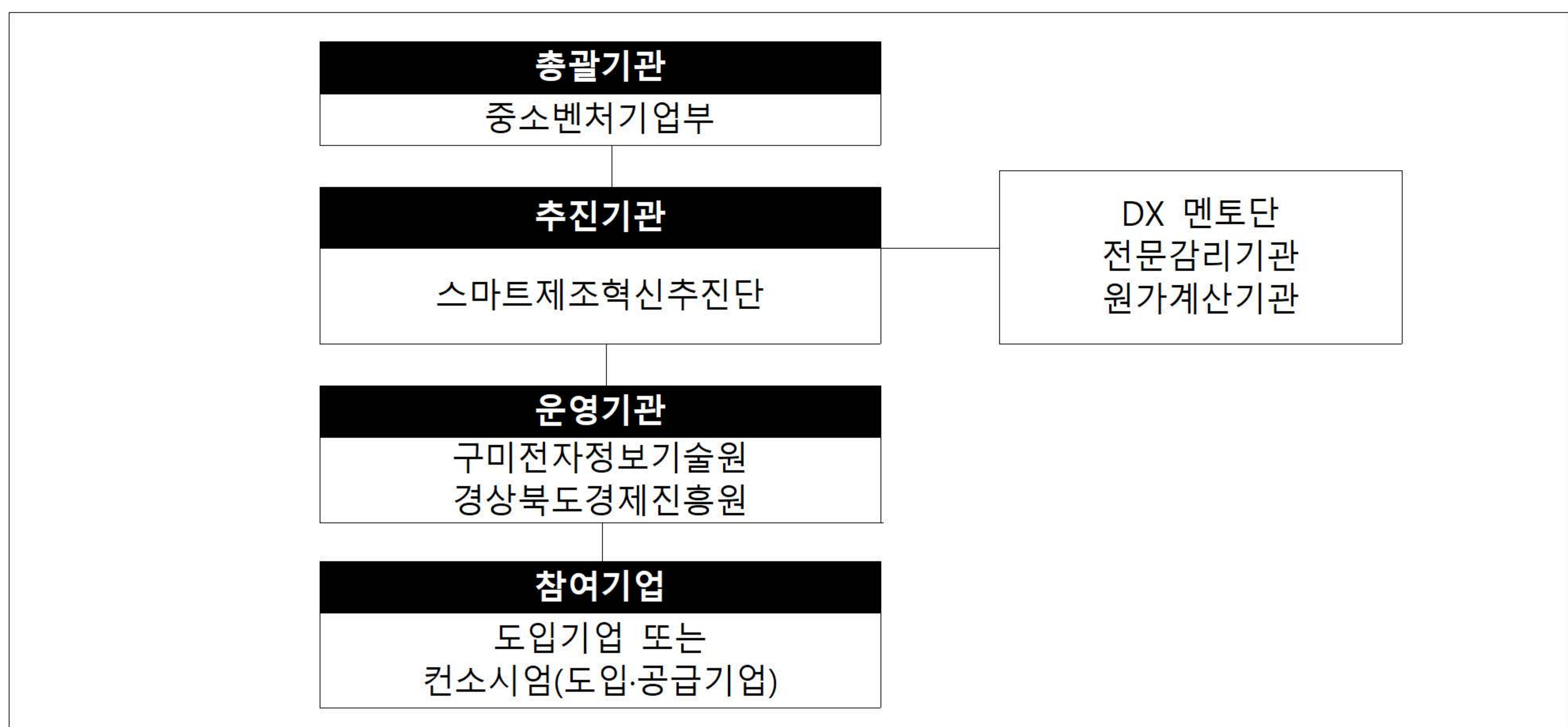
식품 제조·가공업체 생산 제조현장의 첨단화로 안정적인 식자재 관리, 스마트 식품생산, 품질관리기반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식품 산업 분야 스마트 제조 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2026년 경북 지역 특화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I. 사업개요

- (사업목적) 경북 식품업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여 데이터 활용과 품질 중심의 제조 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식품 제조업으로 성장도모
- (지원대상) 경북 지역내 식품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규모) 2개사(고도화 2개사)
- (추진체계)



- (관리기관) 시·군 지자체, 운영기관, 기업 간 협력 체계를 조율하여 사업 추진의 통합성과 협업 체계 강화
- (추진기관) 사업의 총괄관리 및 운영
- (운영기관) 참여기업(도입·공급기업) 모집, 신청기업 선정평가, 과제추진점검, 정부지원금 지급·정산 등
- (도입기업)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동 지원사업을 수행
 - * 식품업 스마트공장 구축 도입을 희망하여 사업참여 신청 후 수행·전담기관의 평가를 거쳐 최종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 (공급기업) 도입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솔루션 구축 관련 사업계획서 작성 협력 및 이에 따른 솔루션 구축,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II. 사업 지원계획

□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구축) 식품업의 식자재 관리, 스마트 식품생산, 품질관리기반 구축으로, 자동화 장비·제어기·센서와 연동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한 고도화 단계
 - * 스마트공장 식품업 분야 등급별 기술수준 정의 [붙임 1]참조
- (고도화) 중소·중견 **식품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수준 '중간1' 이상을 목표로 설정한** 식품업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
- (사업화) 도입 및 공급기업과의 매칭으로 식품 설계·생산공정 개선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으로 식품업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성과를 극대화 지원
- (지자체 특화프로그램) 지역 식품업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기업을 기반으로 생산·품질 향상과, 기업 브랜드 강화로 기업 정책자금 단계별 맞춤 지원프로그램 연계지원

□ 지원조건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수준별 총 2.5억원 내에서 2회(1회차고도화 → 2회차동일수준)까지 지원하되, 회당 최대 2억원 한도, 지원비율 50% 이내에서 지원가능

* (예) 26년(목표수준 중간1, 고도화) 1.5억 → '27년 이후(목표수준 중간1, 동일수준) 1억

* 2회차 동일수준 지원은 1회차 고도화 사업 완료(성공 판정) 이후 지원 가능

지원유형	지원기간	정부 지원한도	지원 비율	구축목표수준※
고도화	최대 9개월	최대 2억원 이내 (단, 수준별 2.5억원 한도)	50% 이내	중간1 이상 목표설정필수
고도화(동일수준)				

※ 구축목표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1) 스마트공장 식품업 분야 등급별 기술수준 정의 [붙임1 참조]

※ 스마트공장구축 우대가점부여 : 최대 2개까지 인정 [붙임5 참조]

※ 지자체 특화 프로그램 :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연계지원 [붙임2 참조]

- 단, 공고일 전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고도화” 지원받은 기업이 '26년도 “동일수준” 신청시, 기존처럼 최대 0.5억원, 6개월 이내 지원 가능(동일수준 지원은 목표수준별 1회만 지원 가능)

< 예외 사항 >

-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고도화” 신청 가능(예: 과거 중간1을 목표로 지원받은 기업이 초과 달성하여 '중간2' 구축성공한 경우, 동 기업이 사업신청 시 중간2(고도화) 유형으로 2억원까지 지원가능)
-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 [참고1] '26년도 사업 신청 예시별 지원조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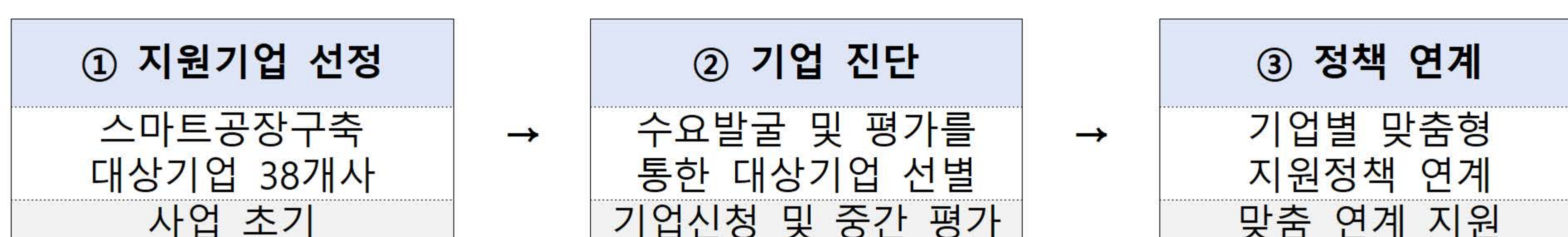
○ 지자체 특화 프로그램

지원 유형	지원 내용	지원예산 (억원)	비고
정책 자금 지원	[정책자금 지원] 경쟁력 강화 자금 - 창업, 기존 제조업체 등 생산설비에 소요되는 자금 장기저리, 융자 지원 * 금리 2.5%(변동), 8억원(시설)/3년거치, 5년 균등분할 * 사업장 신축 및 부지매입비, 공장매입비, 사업장 증·개축, 생산설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총융자액 600억 규모로 운영 중	지원 예산 범위 내 일부 연계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K-푸드 수출향 제품·패키징 샘플 제작비 지원 - 포장 제품개발, 시제품/포장재(파우치/박스/스티커) 제작 - 최대 4백만원, 사업기간 6개월	0.2	
제품인증 평가 지원	[인증평가지원] K-푸드 수출대응 시험·표시 적합성 평가비용 지원 - 해외규격 '인증 취득' 비용, 수출 적합성 검토 인증비용 - 최대 4백만원, 사업기간 6개월	0.4	
기업 경쟁력 판로 지원	[AI 활용 마케팅 및 수출전략 지원] 온라인 마케팅 전략 - 온라인시장 진입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진흥원 사업참여 유도를 통해 연계 * 제품개발, 온라인입점 및 판촉 지원, 라이브커머스(AI활용) 등 * 경북 대표 브랜드로 기업 맞춤형 B2C 지원프로그램 운영	0.1	
AI 기반 표준화·연계	[데이터 표준화 및 고도화] 생산·품질·원재료 시스템 플랫폼 컨설팅 - MES·POP에서 발생하는 생산·품질·설비 데이터 코드 표준화 - 빅데이터·AI 활용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후 예지보전 솔루션 - 스마트공장 기능도 활용 및 고도화 플랫폼 컨설팅	0.4	
박람회 참가 지원	[식품산업전 운영지원] 지역 식품산업전 행사 참가 및 운영지원 - 지역 푸드테크 기반 축제 참여(라면축제, 푸드&테크페스티벌) - 행사 기반 체험참여 프로그램 지원 및 시식, 쿠킹클래스 운영지원 - 지역 농식품 활용 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0.9	

★ 지자체 특화프로그램 기업지원사업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참여 기업 연계지원

※ 지자체 특화프로그램 : 기업 정책자금 지원 등 6개 사업 [붙임4 참조]

※ 사업운영요령 (지자체부분) 재정을 통해 지자체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기업지원사업 도입기업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



2. 신청기간 · 방법 및 자격 등

□ 신청 기간·방법

○ (신청 기간) '26. 9. 9.(수) ~ '26. 9. 17.(목) 17시까지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신청·제출·수정 불가)
- ☞ 공고 미숙지,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 (신청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신청

- ☞ 신청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필수

○ (제출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구분	제출서류 목록
공통 제출 (도입·공급기업)	- 사업 계획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도입기업 제출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22~'24) -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제출 - 최근 년도('25)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 - 가점 증빙 서류(해당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알림/참여마당-자료실' 참고

□ 신청 자격

- (도입기업) 국내 식품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식품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제조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 (지원 제외 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 | |
|---|---------------------|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이미 수행 중인 기업 [붙임3] 참고

※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3. 평가 및 추진 절차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스마트공장 기업선정 절차 [붙임4] 참고

- (서면 평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지원 적정성 및 도입·공급기업 역량 등 평가

* 지역별 신청 과제수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 가능,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 받은 기업은 서면 평가 면제

- (기술성 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목표·방식, 달성가능성 및 기업역량 등 대면 평가
- (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신청 가점 등의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일부 예외 인정* 단, 공장설립(계획)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 검토를 통해 기간 내 구축 가능 여부 확인
- * (예외 인정항목)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 (최종 선정)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과제 확정

※ 단계별 평가 일정, 결과 등은 운영기관(구미전자정보기술원(푸드테크제조혁신사업단))에서 안내 예정

□ 추진 절차



* ⑩최종평가결과 "보완"인 경우 '⑪집중A/S' 및 '⑫재평가' 진행

4. 유의사항

☞ 세부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및 사업수행

□ 신청·접수 관련

- (컨소시엄 구성)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함께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온라인 접수

- 다만,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단독 신청도 가능(필요시 사업종료 후 별도 정밀 정산절차 진행)

※ 사업계획서 작성 도움 및 공급기업 추천 등이 필요한 기업은 'DX멘토단 활용 지원사업('25.1월 기 공고)'을 통해 컨설팅 및 공급기업 추천을 받을 수 있음

- (구축 목표 설정) 기존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

※ (이전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확인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에서 조회 ('20년 이후 구축수준 중 높은 수준을 적용)

※ '스마트공장 구축' 예외 사항

-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고도화"** 신청 가능
* (예시, 초과달성) ①'기초'목표로 수행후 '중간1' 달성, ②'중간1'목표로 수행 후 '중간2' 달성

-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 (보안대책 수립) 구축 솔루션 및 설비의 안정성 보장, 기업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솔루션 구축·연동 등 보안 대책수립 필수

□ 사업비 편성 관련

- (필수 비용) ①회계 정산 수수료, ②교육비 및 ③기술임치비용을 사업비의 기타 비용에 필수 포함

- ① 회계 정산 수수료 : 지정 회계법인의 사업비 상시 모니터링 및 정산을 위한 수수료 필수 편성

<회계정산 표준수수료 현황>

총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공급가액 기준, 천원)	비고
50백만원 이하	455	부가세 제외
200백만원 이하	637	
400백만원 이하	910	
400백만원 초과	1,182	

* 정산대상 사업비(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② 교육비 : 스마트공장 기술교육(사업관리교육 및 기술교육) 수강 비용 (1백만원) 필수 편성

- ③ 기술임치비 : 스마트공장 구축 결과물의 기술임치비(45만원) 필수 편성

< 기술임치제도 >

- **(임치제도)** 사업 결과물의 핵심 정보를 보관하여 개발 결과, 보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
- **(임치효과)** 기술임치 시 개발 및 보유사실 시점의 입증과 기술탈취방지, 유지보수 등에 임치내용을 활용가능
- **(의무사항)**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도입기업은 과제 완료시, 구축 결과물 일체를 **2년 이상 기술임치**하고, 기술임치계약서와 기술임치증 필수 제출

※ (임치기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02-368-8484,escrow@win-win.or.kr)

- **(현물편성)**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현금·현물 모두가능)와 도입기업 인건비를 합하여 기업부담금 중 20%* 내에서 현물로 편성 가능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는 사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3년의 비용*을 편성 가능하며, 협약 기간 내에 클라우드 사용을 시작하여야 함

* 소기업은 최대 5년 이내 편성가능하며, 소기업 규모 기준은 [참고] 확인

- 스마트공장 구축 및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도입기업 인건비 편성 가능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정산 시 확인 예정

□ 교육 이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스마트공장 교육”을 이수하고 중간 점검 또는 완료 보고 시 수료증을 필수 제출
-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 사업처

<스마트공장 교육 현황>

구분	세부 내용
사업관리교육 (온라인)	- 대상 : 도입·공급기업(대표자 및 임원, 실무자)[총 4명] -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방지교육, 우수사례, 사업비 사용법 등 * 협약 후 중간점검 전까지 수료 후, 중간보고서 제출시 수료증 첨부 - 비용 : 온라인교육 무료수강(https://ssup.kosmes.or.kr)
기술교육 (오프라인)	- 대상 : 도입기업(대표자 및 임원, 실무자)[총 2명] - 내용 : ①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완료보고서 제출 시 수료증 첨부 - 집합교육으로 비용 발생(사업계획서에 교육비 100만원 계상)

* 교육 상세내용 및 일정은 협약 체결 후 추진기관·운영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 기타 사항

-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에 연동하여 구축완료 후 3년간 제출 필요
- ※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 자격·유형·지역 등의 분류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며, 오기재·누락·허위기재 등의 사항 발견 시 평가·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협약 후에도 협약해약 및 제재 조치 등 가능
- 온라인 신청·접수 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담당자의 연락처 오류 여부 필수 확인

5. 추진근거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2023-80호, '23.8.7)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 관리지침 및 세부 관리기준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담당 기관

구분	주체	역할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세부관리지침 등 관리 -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 및 평가 등
운영기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과제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운영, 과제 관리 등 - 지자체 특화프로그램 연계지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지자체 특화프로그램 연계지원
참여기업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 또는 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

6. 문의기관

담당기관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시행계획 공고관련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추진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운영기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신청·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문의처 참고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사항은 '사업관리시스템 - 전체메뉴(우상단) - 마이페이지 - 고객센터 - SR요청' 으로 문의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http://smart-factory.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운영기관 문의처

기 관 명	연 락 처	주 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첨단푸드테크연구센터)	054-479-2242	경북 구미시 산동읍 신당리 1038번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2-2989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